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-66호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11월 11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가.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,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.

나.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,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

다.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, 마을정원사의 양성·운용, 정원 관련 교육의 민간위탁, 정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, 정원도시 조성 및 구민 복지 증진(안 제3조~제5조)

다. 정원문화의 육성·진흥 및 구민 참여 원칙(안 제6조~제8조)

라. 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(안 제9조)

마. 마을정원사의 양성·수료 및 운용(안 제10조~제11조)

바. 정원 관련 교육과정의 민간위탁(안 제12조)

사. 정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무 위탁(안 제13조)

아.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(안 제14조)

자.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3. 입법예고기간: 2026. 11. 11. ~ 2026. 11. 17.(7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11월 17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(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(전화: 2147-3662, FAX: 2147-3956, e-mail: khjjj@songpa.go.kr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,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(www.songpa.go.kr)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(www.council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